

북한의 상업활동 변화와 2000년 이후 상업법 개정*

김영희** · 김병욱***

- I. 문제제기
- II. 북한의 상업활동에 대한 이해
- III. 90년대 전후 상업활동의 변화
- IV. 북한의 상업법과 최근 개정동향
- V. 결론을 대신하여:
사회주의 상업법 개정방향

국문요약

1990년대 이후 북한주민들의 물질생활에 필요한 소비품은 국영상점이 아닌, 종합시장에 의해 대부분 공급되고 있다. 이는 당국이 내세웠던 수요조절과 평균분배의 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체제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부터 상업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이 정비차원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개선을 지향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90년대 전후 상업활동 변화에 따른 상업법의 개정 동향을 살펴보고 그 방향을 전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주의상업법 개정은 개선차원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으나, 시장에 의한 주민공급을 지향한다고 볼 수 없다. 특정상품에 한해서

는 계획에 의한 주민공급을 일관되게 진행하면서 상업활동에 필요한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상적 행위자들의 시장활동이 이윤획득을 위한 주요수단으로 되지 않도록 강제 조치를 동시에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 의한 공급이 사회주의 상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어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상업은 과거의 불완전한 상업행태에서 완전한 상업행태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사회주의상업법 개정은 정비 차원의 개정을 기대하나 현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당국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주제어: 상업법, 주문제, 종합시장, 법개정, 주민공급

* 이 글은 <북한법연구회 제213회 월례 발표회(9월 14일)>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충한 것입니다. 유익한 조언을 주신 장명봉회장님을 비롯한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한국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 사단법인 북한개발연구소 소장

I. 문제제기

북한은 일찍이 주민들의 물질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준다고 강조하여 왔다. 그러면서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상업과 달리 사회주의 상업은 주민들에게 평등한 물질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수단이 바로 국가계획에 의한 공급제도인 사회주의 상업제도의 운영이며 또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사회주의상업법이다.

오늘날 북한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제품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종합시장이 주민생활에 필요한 상품공급의 주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결국 당국의 의지와 달리 계획에 의한 주민공급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로부터 전주민이 시장에 의거해 살아가고 있다. 시장에 의한 주민공급이 확대되는 것은 평균분배의 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북한의 체제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나름의 대응책을 마련하려 할 것인데, 이는 당국이 실행하는 상업 활동의 결과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상업법의 개정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상업법의 개정은 정비 혹은 개선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상업 활동은 어떠한 양상을 띠게 되며 상업법의 개정은 어떤 것을 지향하며 상업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에서 상업 활동과 연계해 상업법의 개정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90년대 전후 상업 활동 변화에 따른 상업법의 개정 동향을 살펴보고 그 방향을 전망하려고 한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북한의 상업법은 현재까지 6차례 수정 보충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법연구회에서 발간한 북한법령집에 소개된 3개의 법(2002년과 2004년, 2010년 수정 보충된 법)을 근거로 살펴보려 한다.¹

북한에서 상업활동은 국가 차원과 주민 차원의 상업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서는 계획에 의한, 후자에서는 시장에 의한 활동이 주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상업법 개정은 국가차원의 상업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전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¹ 장명봉 편, 『김정일체제하의 최근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05); 장명봉 편, 『2013 최신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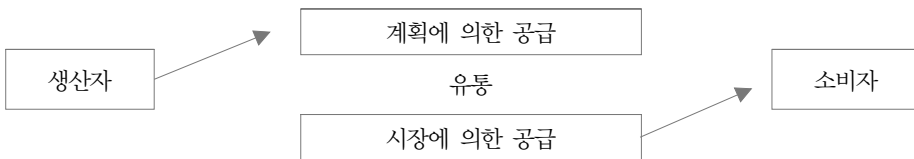
II. 북한의 상업 활동에 대한 이해

1. 상업의 의미, 법 개정과의 관계

상업은 말 그대로 상품을 사고파는 활동이다. 생산된 상품은 상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므로 생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는 중간과정,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상업은 또 다른 말로 유통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상업의 일반기능은 공정 상 측면에서 보관, 운송, 매매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소비자에 대한 생산품 공급으로 끝난다. 이러한 기능은 그 주체와 계획성 유무에 따라 국영기관과 시장의 역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에서는 공적소유에 기초한 획일적인 서비스에 의한, 후자에서는 사적 소유에 의한 다양한 서비스에 의한 상품 공급활동이 강조된다. 주민들의 물질생활에 필요한 소비품 공급(이하 주민공급)과 관련해, 계획에 의한 주민공급에서는 물질생활에 대한 복리증진과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이, 시장에 의한 주민공급에서는 이윤획득이 주된 활동을 이룬다. 이에 따라 공급시스템 운영도 계획에 의한 주민공급 시스템과 시장에 의한 주민공급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북한의 경우 계획에 의한 공급 시스템에서는 상업관리소나 국영상점의 역할이 강조되고 시장에 의한 주민공급 시스템에서는 종합시장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체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계획에 의한 주민공급 시스템과 시장에 의한 주민공급 시스템은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사회주의권에서는 계획에 의한 주민공급 시스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체제변화와 더불어 시장에 의한 주민공급 시스템이 압도적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상품공급체계의 구분



상업법은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맞게 상업정책이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제기되는 정책방향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개정된다. 법 개정이 기존정책에 대한 유지를 강조한다면 정비차원의, 혁신을 지향하고 있다

면 개선차원의 법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주민공급시스템 유형 중 어느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가에 따라 정비 혹은 개선차원의 개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계획에 의한 주민공급 시스템의 운영이 강조되었다면 정비차원의, 시장에 의한 주민공급 시스템 운영에 관심을 보인다면 개선차원의 법 개정이라 할 수 있다.

2. 상업 활동 특징과 유형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립되는 사회주의 체제의 상업을 사회주의상업이라고 하며, 이는 사적소유가 존재하고 이윤추구가 목적인 자본주의 상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 상업의 본질은 주민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 사업이라고 하고 있다.² 그러면서 사회주의 상업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³

첫째, 국가의 중앙집권적 공급계획에 의해 공급활동을 진행한다.

둘째,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품을 주문(注文)받아 공급한다.

셋째, 수요조절과 평균분배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공급활동을 진행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상업이 주민들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상품을 골고루 원만히 차례지게 하여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⁴ 이를 위해 1990년대 이전에는 5가지의 기초식품과 206가지의 일용잡화 55가지의 건재품을 합하여 총 266가지의 상품을 주민공급의 필수항목으로 제시하였고 국영상점을 통해 무조건 공급하도록 하여왔다.⁵ 국영상점을 통한 공급에는 도매소와 상업관리소가 참여하고 있다. 도매소가 중앙공업에서 생산된 상품을 전국의 상업관리소에 유통시킨다면, 상업관리소는 도매소에서 받은 상품과 지방공업에서 생산된 상품을 주민들에게 직접 공급하는데 이는 주문에 의한 공급제(주문제)를 통해 이루어진다.⁶ 상업관리소의 이러한 활동은 민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민법 제

² 김일성, “사회주의 하에서의 상업은 본질상 인민들에 대한 공급 사업이다,” 『김일성저작집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233.

³ 김영희, 『북한 소매상업 유통체계 변화와 전망』 (한국산업은행보고서, 2007), p. 38.

⁴ 백과사전편찬위원회, 『광명백과사전』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0), p. 210.

⁵ 김영희, 『북한 소매상업 유통체계 변화와 전망』, p. 41.

⁶ 상품공급이 주민들의 주문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제도이다. 북한은 주문제가 모든 주민들에게 소비품을 계획적으로 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인민적인 상품공급제도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생산력 저하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150조에서는 기업소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공급을 상업관리소만이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상업관리소는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상품주문서를 만들고 그에 따라 상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 북한은 모든 물건이 넉넉하게 생산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게 될 때 주문제는 없어지고 완전한 공급제로 넘어가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문에 의한 공급은 수요의 조절과 평균분배를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주민공급 사업에는 종합시장도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은 상업관리소와 시장관리소로 이원화 되었다.

<표 1> 1990년대 이후 주민공급의 특징

구분	상업관리소	시장관리소
공급내용	소비재	소비재 및 생산재
공급발단 단위	국영상점	종합시장
관리기구	시, 군(구역) 인민위원회 상업과	시, 군(구역)인민위원회 상업과
공급방법	주문에 의한 공급	자율공급

북한은 소비품 판매외 사회급양, 편의봉사, 수매도 상업에 포함하고 있다. 소비품판매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품을 공급하는 활동이며, 사회급양은 주민들의 식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활동이다. 편의봉사는 주민들의 물질문화 생활 및 건강 보호증진에 이용되는 활동이다. 수매는 도시와 농촌,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켜 주민들의 식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며 공업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러한 상업활동 중에서 북한이 관심을 갖는 것은 소비품 판매와 관련한 활동이다. 북한은 소비품의 수요를 조절하고 평균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국영상점을 통한 주민공급을 실시해왔다.

⁷ 장명봉 편, 『김정일체제하의 최근 북한법령집』, p. 249.

III. 1990년대 전후 상업 활동의 변화

1990년대를 전후로 한 상업활동의 변화는 상업관리소, 그리고 시장에 의한 주민공급활동의 변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1. 상업관리소의 공급기능 변화

북한에서 상업관리소는 주민공급의 말단단위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상업활동의 변화는 상업관리소의 기능 변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1990년대 이전 상업관리소의 공급기능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상업관리소는 상점을 통하여 연간, 분기별로 지역 주민들의 주문을 받아 상품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소비자인 주민으로부터 상점, 상업관리소를 통하여 작성된 주문서에 맞물려 생산이 진행되며 도매소는 그에 따른 상품을 인수 혹은 출하하여 상업관리소에 배분 공급하였다.

둘째, 상업관리소는 주문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운송하여 공급지에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시, 군(구역)지방산업 공장들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지구도매소 인수원의 입회하에 생산지에서 직접 인수하였다.

셋째, 상업관리소는 인수된 상품에 대해 계산서에 근거하여 검수를 진행하고 창고에 보관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당과류, 신발, 의류 등 포장 상품이나 개수상품인 경우 창고보관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상품을 시, 군(구역)의 읍, 동(리)에 위치해 있는 상점들에 공급하였다.

넷째, 상업관리소는 농경지에 속하지 않는 야산이나 실개천의 땅을 개간한 원로 기지에서 생산된 원자재로 가공제품을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였다.

1990년대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공장·기업소는 원료난, 전력난으로 상품을 계획대로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상업관리소는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서는 네 번째 기능은 대폭 하락하고 특정계기를 맞아 상품을 공급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4월 15일과 2월 16일을 맞아 주민 세대들에 기초식품이나 어린이들에게 당과류를 공급하는 것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소비품 생산이 급감하면서 상업관리소는 비합법적으로 개인 혹은 무역회사 수입품을 받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비합법적 활동은 2002년 7·1조치 이후 합법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는 북한의 공식문

현에서 찾을 수 있다.⁸

“인민소비품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오늘의 실정에서 국영상점들에 수입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현재 주민들에 대한 수입상품 공급은 시장의 매대나 국영상점을 통한 위탁판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탁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의 명칭을 ‘수매위탁상점’으로, 위탁상품을 판매하는 매대는 ‘수매위탁매대’로 간판을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국영상점은 평상시에는 각종 수입상품들을 판매하고 특정명절 때에는 한 시적으로 명정상품을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영 상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매대를 기관, 기업소에 임대해 주기도 한다.

김정은 등장 이후 상업관리소의 공급기능 변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국가 계획으로 하달된 상품에 의한 공급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시장의 수요에 의해 비합법적으로 생산된 상품도 국가 상업기관을 통해 공공연히 공급되고 있다. 이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월간지 ‘조국’ 2013년 6월호에 실린 내각 상업성의 오영민(43) 국장의 인터뷰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계획된 상품만 받아서 계획된 상업망들에만 넘기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계획 외의 상품까지도 주문받아 운송해주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⁹

2. 시장에 의한 주민공급기능 변화

가. 주민공급의 유형과 당국의 대책

현재 북한사회에서 시장에 의한 주민공급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국가가 제정한 장소를 통해 운영되는 제도로서의 시장에 의한 공급이며 다른 하나는 주민들 사이에 약속된 장소를 통해 운영되는 관계로서의 시장에 의한 공급이다. 제도로서의 시장에 의한 공급은 종합시장 운영을 들 수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국가의 법적 보호를 받는 장소를 통해 거래한다. 이러한 시장은 남한의 시장과 달리 국가에 의해 지도 통제되는 국영기업소 경리활동의 한 부분이다. 시장의 거래대상, 거래품목 등이 국가에 의해 정해지며 시장사용료(시장임대료)

⁸ 조선로동당역사연구소, 『우리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 201.

⁹ 『연합뉴스』, 2013.6.30.

도 국가에 귀속된다. 관계로서의 시장에 의한 공급은 국가가 통제하는 상적행위를 통해 운영된다. 여기에는 북한 주민들이 “메뚜기 장”¹⁰이라 부르는 비공식 시장이 있다. 시장경제하에서 관계로서의 시장에 의한 공급으로 합법적인 인터넷 쇼핑물을 비롯한 무점포 운영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계획경제에서 관계시장은 체제유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 때문에 음성화 되어 있다.

북한에서 시장에 의한 공급은 199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 농축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농민시장 운영에 국한되어 있었다. 2003년 공식적으로 종합시장을 승인하면서 거래품목이나 판매주체, 관리기구 등에서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표 2> 1990년대 전후 시장변화

구분	1990년대 이전	1990년대 이후
거래품목	소비재(농축산물에 국한)	소비재, 생산재
판매주체	협동농장, 개인	협동농장, 개인, 기관·기업소
소비주체	개인	개인, 기관·기업소, 단체
관리기구	상업관리소	시장관리소

당국은 내각결정 24호(2003.5.5)를 통해 종합시장으로 명명하였다. 소규모의 상설시장을 크게 확장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을 신설하기도 했다. 그리고 시장의 매대(물건을 팔 수 있는 자리)를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이나 노인들에게 배정하도록 하였다. 거래 상품으로는 개인이 자체 생산한 것은 물론 기업소와 협동단체가 생산한 계획 외 초과분도 종합시장을 통해 팔 수 있게 했다. 평양 통일거리 시장의 매대 경우 5%를 공장 기업소 몫으로 할당하였으며 계획외 생산된 생필품 중 30% 한도 내에서 시장판매할 수 있게 승인하였다.¹¹ 또한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1조치 발표 후 공장, 기업소들 간에 부족되는 일부 원자재, 부속품 등을 물자교류시장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했다.¹² 당국

¹⁰ 보안원(경찰)이나 규찰대가 단속하면 달아났다가 단속자들이 가면 다시 모여드는 식의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시장의 한 형태이다. 판매자 측에서는 시장운영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 구매자 측에서는 장 보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싼값에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¹¹ 권영경, “북한의 최근 경제개혁 진행 동향에 대한 분석,” 『수은경제』, 2005년 겨울호.

¹² 지난 시기 북한에서 기업들에 대한 물자교류는 평양시 형제산구역 간리에 상주하여 있는 중앙자재상사의 독점적, 계획적 물자공급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는 물자를 생산현장까지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보장하여 주어 생산적 열의를 양양시킨다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주요 논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물자난으로 하여 국가의 물자공급기능이 약해지자 이를 보

은 기업들의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4년 4월 수정보충 된 「재정법」을 통해 현금보유를 허용하였고 현금이용 권한을 확대하였다.¹³

북한은 시장에 의한 주민공급을 위해 개인이나 기업들도 국가재산을 합법적 경영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컨대 공공재산임대방식¹⁴을 들 수 있다. 내각결정 제24호를 통해 무역회사들이 국영상점, 식당 등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무역회사들이 국영상점을 통째로 인수하여 운영하거나 개인들이 국영상점 내 매대를 임대받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의 시장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대책도 강구하였다.¹⁵

“시장은 시, 군(구역)의 주민수와 지대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람들이 리용하기 편리한 곳에 한 개 또는 몇 개씩 꾸려야 한다.”

당국의 지시에 따라 시장이 과거의 도시외곽에서 도시중심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지방예산에서 개인들이 시장에서 얻은 소득으로 납부하는 ‘개인납부금’ 비중이 커지고 있다.¹⁶

나. 주민공급 패러다임의 변화

시장에 의한 주민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상업활동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상업활동이 특종소비재 판매가 아닌, 수요에 따른 모든 소비재 및 생산재 판매로 확대된 것이다.

둘째, 판매 일면에서 벗어나 보관 및 운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개인장사가 주변국 시장과 연계한 상업활동으로 확대된 것이다.

완하기 위해 2002년 7·1경제조치와 더불어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3년이 지난 2005년 6월에는 수입물자교류시장도 내왔다.

¹³ 2004년 4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16호로 수정보충 된 재정법 제3장 36조에서는 “경영활동과정에 이루어진 순수득에서 국가 납부 몫을 국가예산에 먼저 바치고 나머지를 자체충당금, 장려금, 상금기금 같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¹⁴ 공공재산 임대방식에서는 임대자가 이용권과 소득권을 전부 부여받는 형태로 재산권을 행사하게 된다. 임대자는 국가에 임대료를 납부하면 된다. 임강택·김성철, 『북한재산권의 비공식이행』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 16.

¹⁵ 조선로동당역사연구소, 『우리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 199.

¹⁶ 위의 책, p. 229.

한마디로 시장에 의한 주민공급으로 인해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은 본질적 행태에서 이탈하고 있다.

시장에 의한 판매기능에서 이색적인 것은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른바 “뽕”¹⁷이라고 하는 중고품 공급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¹⁸ 중고품을 뽕처럼 압착한 80키로의 물건인데 상품의 종류에 따라 의류뽕, 신발뽕 등으로 불린다. 외국사람들의 생활수준 상 중고품이 몇 번 안 입고 버린 것, 신상품에 비해 1/5 혹은 1/10에 못 미치는 가격이어서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고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중고품은 보통 중국에서 밀수되는데 혜산이나 무산을 비롯한 국경지역의 시장을 통해 전국에 공급된다. 또한 과일과 채소공급을 들 수 있다. 중국과의 변경무역, 보따리 장사가 활성화됨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돈만 있으면 사계절 파프리카나 양배추를 비롯한 채소와 바나나, 방울토마토, 오렌지,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을 사서 먹을 수 있다.

시장에 의한 보관기능은 시장의 창고나 주변의 집, 국영상점의 창고, 공장·기업소 창고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돈 많은 장사꾼들은 종합시장 내 창고를 비롯한 시장주변의 국가기관을 이용하며 돈이 적은 장사꾼들은 시장주변의 집들에 보관비를 내고 보관하곤 한다. 시장주변의 집들이 보관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시장을 반경으로 멀어질수록 집값이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시장에 의한 운반기능은 개인서비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들이 중국에서 화물차를 구입해 와서는 버스사업소나 자동차사업소 등 국가봉사기관 소속의 차로 등록하고 물품을 운반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 간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재가 생산품으로 완성되어 공급되는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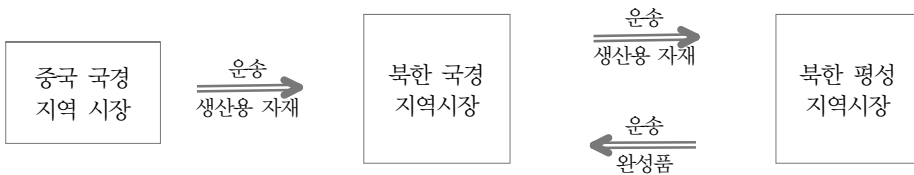
북한의 북쪽지역들에서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가죽장갑이 인기상품이다. 이에 필요한 자재인 가죽이나 가죽 이김에 필요한 화학자재는 변경무역이나 보따리 장사를 하는 중국 사람들에 의해 중국과 인접한 북한의 국경지역 시장에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간 자재는 국경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고 운송브로커들에 의해 기차나 자동차를 통해 평성지역 시장으로 운반된다. 가죽장갑을 만드는 기술이 평성보다

¹⁷ 북한에서는 축구공을 축구뽕, 배구공을 배구뽕이라고 한다. 축구한다는 것을 뽕 차려간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러시아어로 축구를 ‘풋뜨 볼,’ 농구를 ‘바스켓트 볼’이라고 부르는데 동그런 물체를 뽕이라고 하는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¹⁸ 박상진, “북한의 양강도 혜산시장 리뷰,” 『KOFIC 북한개발』, 통권 4호 (2015), p. 134.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평성지역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외국산을 모방한 짝퉁이 개인 수공업자들에 의해 대대적으로 생산되어 팔려나가는 곳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본산지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질이 좋고 값 또한 저렴하여 수요가 높다. 원자재는 중국에서 국경지역 시장을 거쳐 평성으로, 평성에서 제품으로 만들어져 국경지역 시장들에 공급되고 있다.

<그림 2> 주변국 시장과 연계한 개인들의 상업활동



시장에 의한 주민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북한에서 상적행위자들의 활동은 완제품 공급에서 생산용 자재에 대한 운송 및 보관활동까지 확대되었다.

3. 소결: 상업 활동의 변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02년 7·1경제조치, 2003년 종합시장의 공식적 운영 등과 더불어 북한의 상업 활동에서는 일련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종합시장 운영으로 계획에 의한 주민공급이 현저히 축소되면서 시장에 의한 공급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계획과 시장에 의한 주민공급의 횟수와 상품의 품종, 가지수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표 3> 주민공급 비교

구분	계획에 의한 주민공급	시장에 의한 주민공급
공급일	특정명절(2월 16일과 4월 15일 등)	매일
공급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된장, 간장, 기름 등 식품 - 칫솔, 세숫비누 등 공업품 일부 - 3년에 1회씩 학생복 공급 - 매해 어린이 선물당과류 공급 	전 품목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계획에 의한 주민공급은 1년 동안 특정명절일과 일부 상품에 국한되어 이뤄질 뿐이다.

시장에 의한 주민공급의 확대는 일부 상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해산시장의 신발매대인 경우 중국에서 들여온 신발(여름 및 겨울 구두, 아동신발, 장화 등)이 80%, 평남도 순천시에서 들여온 신발(각종 구두)이 10%, 평남도 평성시에서 들여온 신발(군대슈 및 여름신발, 장화 등)이 5%, 해산 신발공장에서 생산된 신발(편리화와 운동화, 솜신)이 5%를 이루고 있다.¹⁹ <표 4>는 2014년 5월 당시 해산시 시장에 관한 자료이다.

<표 4> 시장에서 특정제품이 차지하는 비중

구분	계	중국	북한 내 시장	지역시장
신발	100%	80%	15%	5%
옷류	100%	70%	25%	5%
커튼 및 이불	100%	100%	-	-
라면 및 까면	100%	100%	-	-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북한에서 상업활동은 시장에 의한 주민공급으로 대체되었다고 할 정도이다. 오늘날 북한의 상업활동은 과거 국영상점을 통한 일원적 공급에서 시장에 의한 공급과 더불어 이원화되었다. 유통물건은 국내산 소비재에서 수입산 소비재와 생산재로, 판매에 국한되었던 상업활동은 보관과 운반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또한 개인의 주변국 시장과 연계한 상업활동이 확대되면서 국가 및 개인 차원의 상업활동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¹⁹ 위의 글, p. 136.

<표 5> 1990년대 전후 상업 활동변화

구분	1990년대 이전	1990년대 이후
공급성격	국가에 의한 주민공급	국가에 의한 주민공급과 시장에 의한 주민공급의 병행
	평균분배에 따른 공급	평균분배에 따른 공급과 지불능력 있는 수요에 대한 공급의 병행
공급주관	상업관리소	상업관리소, 시장관리소
공급자	국영 공장·기업소	국영 공장·기업소, 단체, 개인
말단 공급단위	국영상점	국영상점, 종합시장
공급가격	국정가격	국정가격, 시장가격
공급제품	국내산 소비재	국내산 및 수입산 소비재·생산재
공급기능	소비재 공급	소비재 및 생산재 공급, 운반, 보관
주변국 시장관계	국가차원의 활동	국가 및 개인차원의 활동

전술한 것처럼 북한의 상업은 과거의 불완전한 상업행태에서 완전한 상업행태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시장에 의한 공급이 사회주의 상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시장에 의한 주민공급으로 인해 평균분배에 의한 공급 몫이 현저히 축소되는 대신 지불능력 있는 수요에 대한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내세웠던 계획에 의한 수요조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 환경을 조성한다.

IV. 북한의 상업법과 최근 개정동향

1. 북한 상업법의 연혁

북한에서 사회주의상업법은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과 관련한 내용을 규제한 법이다. 계획에 의한 상품생산, 이에 따른 계획적인 상품공급을 내세우고 있는 북한 상업부문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 사회주의 상업법은 1992년에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5차례 수정, 보충되었다.

<표 6> 상업법의 연혁

1992년 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3호 채택
1999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1호 수정보충
2002년 5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2호 수정보충
2004년 6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 수정보충
2006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14호 수정보충
2010년 5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50호 수정보충

2. 2000년 이후 개정된 법 비교

가. 2002년과 2004년 법조항 비교

2002년과 2004년에 개정된 사회주의상업법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²⁰ 개정된 법 조항을 통해 계획에 의한 주민공급의 감소와 시장에 의한 주민공급의 확대에 따른 당국의 고민과 대책을 읽을 수 있다.

(1) 상품공급사업

개정된 상업법에서는 상품공급에서 제기되는 무질서한 현상을 구체적인 명시를 통해 극복해보려는 당국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국영상점에서 판매하는 주민용 상품은 시장가격에 비해 값이 싸기 때문에 관료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법 개정을 통해 기관, 기업소, 단체나 관료들이 주민 공급용 상품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표 7> 2002년과 2004년 법 조항 변화

법조항	2002년	2004년
제27조 (상품비법판매)	중양상업지도기관의 승인없이 회의, 강습, 경쟁, 지원 같은 명목으로 상품을 빼거나 안면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판매 공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중양상업지도기관의 승인없이 회의, 강습, 경쟁, 지원 같은 명목으로 기관, 기업소, 단체가 주민용 상품을 빼거나 안면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판매 공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²⁰ 장명봉 편, 『김정일체제하의 최근 북한법령집』, pp. 282~289 참조.

(2) 수매

북한은 수매를 통해 식품원자재를 확보함으로써 국영식품공장의 생산을 늘리고 생산된 제품을 국영상점을 통해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매활동은 공장, 기업소 생산에 필요한 자재보장과 주민공급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개정된 법에서 수매 활동에 대한 국가계획기관의 역할을 강조한 것과 수매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에서 엿볼 수 있다.

<표 8> 2002년과 2004년 법 조항 변화

법조항	2002년	2004년
제37조 (수매와 신분확인금지)	내각은 해당 중앙기관별로 수매품의 품종과 규격을 정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매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해당 중앙기관별로 수매품의 품종과 규격을 정해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수매선전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매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38조 (여유물건 수매)	해당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수매선전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매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상업기관, 기업소는 수매상점을 지역별로 꾸리고 주민들이 여유로 가지고 있는 물건을 수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매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출처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3) 사회급양

북한은 산업법 개정을 통해 국산식품에 대한 판매를 장려하고 소비자 중심의 경영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원래 북한의 식당은 식료공장에서 생산한 완제품만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이로 인해 손님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공급하려면 식료공장의 생산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식당에서 반제품도 생산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손님들의 요구에 맞는 음식을 식당자체로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표 9> 2002년과 2004년 법 조항 변화

법조항	2002년	2004년
제42조 (청량음료)	사회급양 및 청량음료생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나라에 혼한 원료로 청량음료를 만들어 공급하여야 한다.	사회급양 및 청량음료생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나라에 혼한 원료로 청량음료를 만들어 공급하여야 한다. 청량음료는 필요한 곳에 청량음료점과 간이매대, 이용매대 같은 것을 꾸려놓고 판매하여야 한다.
제46조 (1차가공품 생산)	지방정권기관과 사회급양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공장을 꾸리고 1차 가공제품과 반제품을 생산하여 식당에 공급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사회급양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반제품공장을 꾸리고 1차 가공제품과 반제품을 생산하여 식당에 공급하여야 한다.

(4) 편의봉사

북한은 상업법 개정을 통해 신용보증제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전문거점을 통해 운영해 나가려 하고 있다. 이는 신용보증제의 범위를 생산재에서 소비재로, 제품은 가정용품으로 국한하였고 편의봉사 전문상점을 내을 데 대해 규제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신용보증제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운영이 현실화 됨에 따라 편의봉사부문에서 신용보증제를 실시할 필요가 없게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김정일은 2001년 10월 3일 담화를 통해 “자재공급사업도 계획에 맞물려 생산, 공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보충적으로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 방식은 “공장, 기업소 사이에 여유 있거나 부족한 일부, 원료, 자재, 부속품 같은 것을 서로 유무상통” 하는 형태여야 한다고 하였다.²¹

²¹ 『연합뉴스』, 2004.6.29.

<표 10> 2002년과 2004년 법 조항 변화

법조항	2002년	2004년
제49조 (신용보증제)	국가는 편의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자재, 문화용품 같은 것의 수리봉사에서 신용보증제를 실시한다.	국가는 편의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가정문화용품 같은 것의 수리봉사에서 신용보증제를 실시한다.
제51조 (편의수매)	지방정권기관과 편의봉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점을 지역별로 꾸리고 주민들이 수매시키려는 소비품을 수매하여 팔거나 다시 수리 가공하여 팔아주어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편의봉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수매상점을 지역별로 꾸리고 주민들이 수매시키려는 소비품을 수매하여 팔거나 다시 수리 가공하여 팔아주어야 한다.

(5) 상업의 문화성, 봉사성

법조항을 비교해 보면 상품광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2002년과 2004년, 2010년 법조항에서 상품광고를 잘하도록 일관성 있게 규정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표 11> 2002년과 2004년 법 조항 변화

법조항	2002년	2004년	2010년
제66조 (상품광고)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 진열, 광고 와 조명을 문화성 있게 하여야 한다.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 진열, 광고 와 조명을 문화성 있게 하여야 한다.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 진열, 광고 와 조명을 문화성 있게 하여야 한다.

상품광고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인식은 학술지 ‘경제연구’에서도 읽을 수 있다. 2005년 3월호에서는 상품광고에 대해 “상품을 기동성 있게 소개해 상품 수요를 형성 발전시키고 상품의 판매형식과 방법을 소개 선전하여 근로자들의 구매편의를 도모하며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 봉사활동”이라고 언급하였다. 광고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광고를 잘 하는 것이 인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 상품판매를 촉진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서술하였다.

법조항을 비교해 보면 상품의 진열이나 광고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당국의 대책을 읽을 수 있다. 이는 봉사망 배치, 봉사업종 확대에서 자율성을 부여한 것, 광고와 관련한 법적 통제를 명시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표 12> 2002년과 2004년 법 조항 변화

법조항	2002년	2004년
제63조 (봉사망 조직)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주민 지역의 특성과 인구수, 인민들의 수요 같은 것을 고려하여 상품품종별, 봉사업종별로 전문봉사망을 널리 조직하며 그 형태별 배치기준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사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생활에 필요한 전문, 종합 봉사망과 고급 또는 일반봉사망, 협동식당, 협동편의, 가내편의 봉사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주민지역의 특성과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전문, 종합봉사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봉사업종을 실정에 맞게 정해주어야 한다.
제66조 (상품광고)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 진열, 광고와 조명을 문화성 있게 하여야 한다.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 진열, 광고와 조명을 문화성 있게 하여야 한다. 상품광고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6) 상업시설의 현대화, 상업경영의 과학화, 합리화

북한은 상업봉사와 관련한 구조물과 설비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상업봉사전물에 대한 등록과 이용에 대한 규제에서 찾을 수 있다.

<표 13> 2002년과 2004년 법 조항 변화

법조항	2002년	2004년
제70조 봉사망 건설	국가계획기관과 건설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살림집을 건설하려 할 경우, 봉사망 건설을 예견하며 연간 살림집 건설계획 가운데서 일정한 비율에 따라 봉사망 건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건설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살림집을 건설하려 할 경우, 봉사망건설을 예견하며 연간 살림집건설계획 가운데서 일정한 비율에 따라 봉사망 건설을 계획화하여야 한다.
제74조 상업 구조물 등록 및 이용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건물과 구조물, 설비 같은 것을 정확히 등록하고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상업건물과 구조물, 설비 같은 것은 해당기관의 승인 없이 다른 목적에 리용할 수 없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봉사전물과 구조물, 설비 같은 것을 정확히 등록하고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상업봉사전물과 구조물, 설비 같은 것은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의 승인 없이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7) 상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북한은 상업법 개정을 통해 비법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이는 영업허가 강조, 위법 발견 시 상품 뿐 아니라 현금까지 압수하도록 규제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표 14> 2002년과 2004년 법 조항 변화

법조항	2002년	2004년
제81조 (상업 부문지도)	상업부문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 밑에 중앙상업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상업부문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상품류통과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책임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승인 없이 상점이나 식당, 편의봉사사업소를 내을 수 없다.	상업부문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 밑에 중앙상업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상업부문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상품류통과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책임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상점, 식당, 봉사소를 운영하려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
제86조 (시장관리운영)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사회주의 상업의 보충적 형태인 농민 시장을 옹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시장을 꾸리고 잘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시장관리운영에 대한 지도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이 한다.
제88조 (위약금, 몰수, 벌금)	상품을 계획과 계약에 따라 공급하지 않고 비법적으로 다른 용도에 썼거나 바꿈질, 직매처리 하였을 경우에는 계획수행평가를 하지 않으며 그 금액을 회수하여 국고에 넣는다.	상품을 계획과 계약에 따라 공급하지 않고 비법적으로 다른 용도에 썼을 경우에는 계획수행평가를 하지 않으며 위약금을 물리거나 거래한 상품과 돈을 몰수한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는 상점, 식당, 봉사소는 운영을 중지시키고 벌금을 물린다.

나. 2004년과 2010년 법조항 비교

2004년과 2010년에 개정된 사회주의상업법²²을 비교하면 일련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²² 장명봉 편, 『2013 최신 북한법령집』.

(1) 상품공급

개정된 북한의 상업법은 주민들의 물질생활에 필요한 상품생산과 분배, 공급에서 수입품에 의존하는 오늘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수입상품에 대한 공급 대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15>는 2004년과 2010년에 수정 보충된 상업법의 해당 조항을 비교한 것이다.²³

<표 15> 2004년과 2010년 법 조항 변화

법 조항	2002년	2004년	2010년
10조 (주문제)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기업소는 인민들의 수요를 연구하여 상품주문서를 만들며 그에 따라 상품의 생산과 분배, 공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상품의 생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을 국가계획대로 생산하여 해당단위에 공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기업소는 인민들의 수요를 연구하여 상품주문서를 만들며 그에 따라 상품의 생산과 수입 , 분배, 공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상품의 생산과 수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을 국가계획대로 생산, 수입하여 해당단위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상품공급계약)	생산된 상품에 대한 인수 및 출하는 상품공급계획에 따라 도매상업기관, 기업소가 한다. 필요에 따라 생산된 상품을 소매상업기관, 기업소가 직접 인수할 수도 있다.		생산, 수입된 상품에 대한 인수 및 출하는 상품공급계획에 따라 도매상업기관, 기업소가 한다. 필요에 따라 생산, 수입된 상품 을 소매상업기관, 기업소가 직접 인수할 수도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은 수입병을 없애라며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국산화는 곧 사회주의조국 수호이다’란 논설에서 ‘수입품이 사회주의자립경제의 명맥을 끊어버리고 사람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병들게 한다’면서 ‘수입병을 없애고 생산과 건설을 국산화·주체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조국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이라고 주장했다.²⁴ 이는 수입상품에 대한 공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²³ 2005년에 출판된 북한의 공식문헌인 “우리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에서는 국영상점들에서 수입품공급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06년에 수정보충된 사회주의 상업법이 없어 2004년이나 2010년 법과 비교하지 못한 것에 따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한다. 추측하건대, 2006년 수정 보충된 법조항에는 수입품 공급에 대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²⁴ 『뉴시스』, 2015.3.31.

(2) 시장위치의 재조명

2004년과 달리 2010년 법조항에서 시장관리운영에 대한 해당 상업기관의 통제 대신 국가의 유일적 통제, 책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도가격 준수, 시장 밖에서의 장사행위 금지를 비롯해 시장운영에 대한 국가의 유일적인 강력한 통제도 엿볼 수 있다.

<표 16> 2004년과 2010년 법 조항변화

법 조항	2002년	2004년	2010년
제86조 (시장관리)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사회주의상업의 보충적 형태 인 농민시장을 윽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시장을 꾸리고 잘 관리 운영 하여야 한다. 시장관리운영에 대한 지도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시장을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보조적 공간 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시장에서는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한도가격을 초과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시장밖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소결: 상업법 개정의 특징

2000년대 이후 상업법의 개정행태를 통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에 의한 주민공급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강구되고 있다.

둘째, 수입상품에 대한 계획적인 공급에 이르기까지의 합법적인 공급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셋째, 국가에 의한 공급비중을 늘이기 위해 수매와 같이 과거 부차적인 수단에 대한 활용에 관심을 두고 있다.

넷째, 소비자 중심의 상품공급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다섯째, 시장에 대한 공급을 상업의 보충수단이 아닌 전반적 경제관리 운영의 보조적 공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상의 특징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다섯 번째 내용이다. 2002년도 수정보충된 86조의 경우, 시장을 ‘사회주의 상업의 보충적 형태’라고 표현하였다면 2010년에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보조적 공간’이라고 표현하였다.

북한사전에 따르면 보충은 “모자라는 것을 채우는 것”²⁵의 의미로, 보조는 “보태여 돕는 것”²⁶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사전에 따르는 의미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 시장에 의한 주민공급은 2003년 만해도 상업부문이라는 개별적 영역에서 상품공급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였다면, 이후에는 상품공급이 충족되었다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전반적 경제운동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시기 시장에 대한 당국의 인식은 지방행정단위 차원에서 관여하는 임시적인 상품공급의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국가가 중앙차원에서 유일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제86조에서 판매금지 품목에 대한 통제나 한도가격 준수, 시장밖에서의 상행위에 대한 통제를 규제한 것에서 읽을 수 있다.

V. 결론을 대신하여: 상업법 개정방향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00년대 들어 4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다. 이 글의 서두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이 정비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개선을 지향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1990년대를 전후 한 상업 활동의 흐름과 더불어 살펴보았다.

결과 북한의 상업법 개정은 정비의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가능하다.

첫째, 북한의 상업 활동을 보면, 사회주의 상업 활동의 특징을 변함없이 고수해 나가려는 근본적인 대책이 드러나질 않고 있다. 시장에 의한 주민공급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과거의 단순한 소비품 판매에서 보관, 운반을 포함한 완전한 상업의 행태로 변화되어가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이 없다.

둘째, 북한의 상업법 개정이 내용적 측면에서 개선을 지향하는 단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개정된 법의 조항수와 주되는 개정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업법의 89개의 조항 중에서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수정되는 조항은 15개 조항(16.8%)이다. 2010년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15개 조항이 반복 수정되고 새로 보충된 조항은 2개뿐이다.

²⁵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p. 646.

²⁶ 위의 책, p. 645.

<표 17> 개정된 조항의 개수

총계	개수	2002년	2004년	2010년
지속적으로 수정되는 조항	15	-	27조, 37조, 38조, 42조, 46조, 49조, 51조, 63조, 68조, 70조, 74조, 81조, 86조, 88조	좌동
보충된 조항	2	-	-	10조, 12조

상업법 운영의 핵심은 제2조 상품공급의 기본원칙에도 밝혀져 있듯이, 계획에 의한 주민공급이다. 상업법 조항을 보면 ‘계획’이란 단어가 나온 것이 총 38개 단어이며 이를 포함하고 있는 법은 89개의 조항 중 21개 조항(23%)이다.

<표 18> 법 개정에 따른 계획 강조조항

계획단어 포함된 법 조항(2004년)	계획단어 포함, 개정된 법 조항(2010년)
10조, 11조, 12조, 15조, 21조, 26조, 30조, 33조, 34조, 37조, 53조, 57조, 70조, 71조, 73조, 78조, 79조, 82조, 83조, 86조, 88조	좌동

<표 18>을 보면 법 개정이 계획에 의한 주민공급을 고수하는 정비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상반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계획’이란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조항인 경우 수요조절과 평균분배와 같이 상업법의 원칙을 고수해나가기 위한 규제가 아닌, 시장관리, 상품판매 기관에 대한 지도 등을 규제하고 있다. 북한은 1992년 상업법을 제정한지 25년이 되어오는 현재까지 주문제를 바로 실시한다거나 완전공급제로 넘어가도록 한다는 것과 같은 선언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수정보충 된 상업법에서 수입에 의한 공급을 명시한 것과 같이 북한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 대책도 제시되고 있다. 제70조인 경우 ‘계획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계획화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으며 제86조인 경우 시장을 과거 사회주의상업분야의 보충적 수단에서 전반적 경제관리의 보조적 공간으로 확대시켰다. 이는 북한 당국 스스로가 국영기관을 통한 유일적인 주민공급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상업법의 개선이 시장에 의한 주민공급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을까? 아직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간장, 된장을 비롯한 기초식품과 학생복 공급을 비롯

해 특정상품에 한해서는 계획에 의한 주민공급을 하고 있고 상업활동에 필요한 노동시장이나 금융시장의 운영에 대해서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상적행위자들의 시장활동이 이윤획득을 위한 주요수단으로 되지 못하도록 2중, 3중의 강제 조치를 동시에 취하고 있다.

상업제도 변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강력한 정책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상업법의 현주소이다. 북한에서 시장에 의한 공급은 사회주의 상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북한의 상업은 과거의 불완전한 상업행태에서 완전한 상업행태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상업법 개정은 정비 차원의 개정을 기대하나 현실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당국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 접수: 10월 19일 ■ 심사: 10월 20일 ■ 채택: 11월 24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영희. 『북한 소매상업 유통체계 변화와 전망』. 한국산업은행보고서, 2007.
 백과사전편찬위원회. 『광명백과사전』.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0.
 임강택·김성철. 『북한재산권의 비공식이행』. 서울: 통일연구원, 2003.
 장명봉 편. 『김정일체제하의 최근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05.
 _____. 『2013 최신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14.
 조선로동당역사연구소. 『우리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2. 논문

- 권영경. “북한의 최근 경제개혁 진행 동향에 대한 분석.” 『수은경제』. 서울: 수출입은행, 2005.
 김일성. “사회주의하에서의 상업은 본질상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다.” 『김일성저작집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박상진. “북한의 양강도 해산시장 리뷰.” 『KOFIC 북한개발』. 통권 제4호, 2015.

3. 기타자료

- 『뉴스』. 2015.3.31.
 『연합뉴스』. 2004.6.29., 2013.6.30.

Abstract

Changes of Commercial Activities in North Korea & Revisions on Commerce Laws After New Millenium

Young-Hui Kim & Byeong-Uk Kim

Since 1990's, consumer goods(commodities) North Koreans need have been supplied by official market, not national store. This will affect regime change considerably by weakening the bases of governmental system on control of demand and distribution. In this situation, commerce laws of North Korea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This paper raises a question whether these revisions are just usual adjustments or steps for actual progress by inspecting trend of revisions on commerce laws along with changes of commercial activities around 1990's.

In conclusion, revisions on North Korean commerce laws are kind of ordinary modification and these are not to encourage market to supply consumer goods for North Koreans. Restrictively in some cases, government produce specific goods to meet people's demand. However, labor market and financial market which are necessary for commercial activities are still prohibited. And North Korea government take actions to prevent people from using market as a mean to make one's own wealth but this measure does not seem to be effective because market supply is changing paradigm of commerce itself in the nation.

Commerce in North Korea is now moving from imperfect state to perfect one. Revision on commerce laws reveals dilemma of government that wants just ordinary modification of the law but cannot help accepting demand in reality.

Key Words: Commerce Laws, Order System, Official Market, Revision, Distribution

